

## ◎방송통신사무소공고 제2024-121호

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1월 11일

방송통신사무소장

###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
#### 1. 근거법령
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, 제50조의4(정보 전송 의무 제공 등의 제한), 제76조(과태료)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)
-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, 제15조(송달의 효력발생)

#### 2. 행정처분대상 : 오스카리치주식회사 등 3건

#### 3. 게재(게시)기간 : 2024. 11. 11. ~ 11. 25.(14일)

#### 4. 의견제출 및 자진납부 기한 : 게재(게시)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

※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.

#### 5. 의견제출장소 :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, 한국방송회관 11층 방송통신사무소 이용자지원과

(☎ 02-6735-8131, 팩스 : 02-6735-8144 / E-mail : cuma@korea.kr)

#### 행정처분(예정) 대상자

번호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고지주소	법 령 위반사항	과태료 금액(원)	스팸URL 전화번호	광고 내용
1	오스카리치 주식회사	131311-0274731	충청남도 서산시 예전5로 00	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, 제4항, 제6항	7,500,000	041-***-2840	부동산
2	윤상혁	1992.o.09.	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00	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, 제4항	7,500,000	070-****-0355	정수기
3	김미란	1983.o.21.	경기도 하남시 하남유니온로 00	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, 제4항, 제6항	7,500,000	1688-**05	부동산